2019년 교단 재판위원회 세미나



■ 일시: 2019년 8월 27일(화) 13:00~16:30

■ 장소 : 충무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19년 교단 재판위원회 세미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차

4	일정표	
5	개회예배	
7	교단법과 규정에 명기된 징계와 재판	강의 1.
29	지방회 및 총회 재판 절차	강의 2.
43	교회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강의 3.
55	행정문서서식	

일정표

시 간	내 용	담 당 자
13:00-13:30	개회예배	사회: 한기채 목사 (부총회장) 기도: 정진고 장로 (부총회장) 설교: 류정호 목사 (총회장)
13:30-14:20	강의 1	한안섭 목사
(50분)	교단법과 규정에 명기된 징계와 재판	(전 헌법연구위원장, 전 법제부장)
14:20~15:10	강의 2	이기수 목사
(50분)	지방회 및 총회 재판 절차	(전 헌법연구위원장, 전 법제부장)
15:10~16:00	강의 3	김명종 변호사
(50분)	교회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법률사무소 지킴)
16:00~16:30 (30분)	질의응답	김진호 목사 (교단총무)

개회예배

인도: 한기채 목사(부총회장)

묵 도 다함께

찬 송 다 함 께(찬송가 582장)

- 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 2.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 3.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 도 정진고 장로(부총회장)

성경봉독 아모스 5:21~24

²¹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 나니 ²²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²³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²⁴오직 정의 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 씀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류정호 목사(총회장)

광 고 김진호 목사(총무)

축 도 **류정호 목사**(총회장)

강의 1

교단법과 규정에 명기된 징계와 재판

- 1. 징계의 의의와 목적
- 2. 치리회와 재판위원회 구성 및 보선
- 3. 재판 구분
- 4. 재판 절차
- 5. 해벌 및 복권
- 6. 사면 및 기록말소

한안섭 목사

전 헌법연구위원장 전 법제부장 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

1. 징계의 의의와 목적

가. 징계의 의의: 징계법 제1조에 징계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징계의 의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설정된 법도를 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를 징계하는 사건의 일체가 포함된다.

나. 징계의 목적

1) 헌법 제87조에 징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징계의 목적)

범죄를 방지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

2) 징계법 제2조에 징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징계의 목적)

- 1. 본 법은 헌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케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덕을 세우고, 범행을 방지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 3)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1항에 징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총칙)

1. 교회는 거룩한 공회이므로 교인 중에 죄과를 범하였을 때와 치리회가 부정이 있을 때 이를 징계법에 의하여 징계한다. 이는 저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함이 제일 목적이요, 다음은 교회의 신성을 보존하고자 함에 있다.

2. 치리회와 재판위원회 구성 및 보선

가. 치리회의 구성(징계법 제3조): 징계법 제3조에 교단의 치리회는 당회. 지방회. 총

회이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 치리회에 재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치리회: 당회, 감찰회, 지방회, 총회
- 2) 치리회 내 집행부서: 당회 재판위원회, 지방회 재판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 감찰회에는 재판위원회를 둘 수 없다.

제3조(치리회의 구성)

치리회는 당회 또는 감찰회, 지방회, 총회이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당회, 지방 회, 총회에 재판위원회를 둔다.

3) 헌법유권해석집(2014년도 총회 회의록 /p.110-111)에 사고지방회 혹은 총회에 의해 행정이 정지된 지방회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법 제15조에 의해 처리 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1)

나. 재판위원회 구성

- 1) 지교회 재판위원회(시행세칙 제15조 및 유권해석집 p. 348 10번 라호)
 - 가) 임기: 고소사건 발생 시 운영
 - 나) 위원수
 - (1) 당회가 구성된 교회: 7인
 - 당회원이 부족 시에는 감찰회에서 재판위원을 파송 받아 구성
 - (2) 당회가 없는 교회: 5인
 - 재판위원 4인을 감찰회에서 파송 받아 구성
- 2) 지방회 재판위원회(헌법 제61조 1항)
 - 가) 임기: 1 지방회기
 - 나) 위원수: 7인(판결위원 : 3인, 기소위원 : 2인, 변호위원 : 2인)
 - 다) 자격: 지방회원
- 3) 총회 재판위원회(헌법 제75조 1항 나호)
 - 가) 임기: 3년

징계법 제3조는 '치리회는 당회 또는 감찰회, 지방회, 총회이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당회, 지방회, 총회에 재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지방회 혹은 총회에 의해 행정이 정지된 지방회의 고소(고발)사건은 어느 치리회에서 다루어야 합니까?

해석: 징계법 제15조에 근거해야 합니다.

^{1) 5.} 징계법 제3조(치리회의 구성)에 관한 질의입니다(2014/p.110-111).

- 나) 위원수: 7인(판결위원 : 3인, 기소위원 : 2인, 변호위원 : 2인)
- 다) 자격: 안수 후 20년 이상 된 자로 교회, 내외적으로 징계(실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재판위원의 교체 및 보선

- 1) 회피나 기피로 인한 보선(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3항)
 - 가) 목적: 재판의 공정성
 - 나) 해당사유
 - (1) 재판위원이 고소자이거나 피고소자일 때
 - (2) 재판위원이 피고소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동일교회 (同一敎會)에 소속되어 있을 때
 - (3) 재판위원이 고소자 또는 피고소자와 다대(多大)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 공정을 가지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절차

- (1) 기피 및 회피사유가 발생 시에는 원, 피고의 요청이나, 재판위원회의 자체 결의(해당위원 본인의 의사여부와 상관없이)로 기피 및 회피사유 에 대한 공천부 보선요청을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 (2) 각 치리회에서 각 공천부를 소집하여 재판위원을 보선 교체하며 보선 된 재판위원은 해당사건에만 관여한다. 그러나 해당위원이 피고소자일 경우에는 사건 종료 후에도 복귀할 수 없다.

제2조(총칙)

- 3. 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피 또는 기피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위원은 본인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각공천부에서 보선 교체하며 피고소자일 경우에는 사건 종료 후에도 복귀할 수 없다.
 - 가. 재판위원이 고소자이거나 피고소자일 때
- 나. 재판위원이 피고소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동일교회(同一敎會)에 소속되어 있을 때
- 다. 재판위원이 고소자 또는 피고소자와 다대(多大)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 공정을 가지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2) 재판위원의 임무위배로 인한 해임 징계(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5항) 가) 목적: 재판의 공정 및 원활한 진행

나) 해당사유

- (1) 고의 또는 과실로 소정기간을 지연 및 초과한 경우
- (2) 그 임무를 이탈하여 과격한 언동, 욕설, 폭력 등 행위를 자행한 재판위원
- (3) 기타 방법으로 사건 심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한 재판위원

3. 재판 구분

징계법 제14조 1항에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지방회에서 재판하고, 장로 및 교역 자의 사건에 대한 사건은 지방회, 총회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평신도(헌법 제61조 1항 가호 2, 징계법 제14조)

1심: 당회 재판위원회 → 2심: 지방회 재판위원회

나. 교역자 및 장로(헌법 제61조 1항 가호 2, 75조 1항 나호 4)

1심: 지방회 재판위원회 → 2심: 총회 재판위원회

다. 평신도와 교역자 및 장로(징계법 제14조 2항)

1심: 지방회 재판위원회 → 2심: 총회 재판위원회

제14조(재판 구분)

1.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지방회에서 재판하고, 장로 및 교역자의 사건은 지방회, 총회에서 재판한다.

라. 동일인이 상회와 하회에 공히 피소된 경우(징계법 제14조 2항)

제14조(재판 구분)

2. 상회관련자와 하회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관련자의 재판기관에서 재판하며, 동일인이 상회와 하회에 공히 피소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상회에서 재판한다.

4. 재판 절차

가. 고소 및 상소

1) 고소 성립 여부: 고소가 성립되려면 우선 고소 대상자인 피고소자가 징계를 받아야 할 사건을 저질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고소자가 있어야고소가 성립됩니다.

2) 징계에 부칠 사건

가) 징계법 제4조 '징계에 부칠 사건'의 1, 2항에는 '징계에 부칠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징계에 부칠 사건)

- 1.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교인, 치리회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성경교훈에 준거한 본 교회의 교리, 지도원리, 예배규범, 생활규범을 위반하거나 정체나 제도 이외의 행동을 취하며 선동하는 사건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와 이의 사건
- 나) 헌법유권해석집(2002년도 총회 회의록 /p.93)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집행유예는 금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 다) 헌법유권해석집(2004년도 총회 회의록 p.100)은 사법당국에서 무혐의 처리 된 사건에 대해 '교회법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³⁾

3) 고소자

가) 징계법 제7조 1항에 고소자가 있거나 치리회가 인지한 사건도 고소자가 되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고소)

- 1.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고소자가 있거나 각급 치리회가 인지한 사건은 고소자가 되어 심리할 수 있다.
- 나) 헌법유권해석집(1988년도 총회 회의록 p.122)은 '인지사건은 치리회에 통

징계법 제4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와 이의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81일을 위 형에 삽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금고형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석: 해당이 안 됩니다.

3) 7. 징계법 제4조(징계에 부칠 사건)에 관한 질의입니다(2004/p.100).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사법 당국에 고소했는데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는데 사법 당국의 이와 같은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유죄로 할 수 있는지요? 해석: 교회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9.} 징계법 제4조(징계에 부칠 사건) 2항에 관한 질의입니다(2004/p.93).

보하여 치리회의 고소에 의해 추가 기소하여 처리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4)

- 다) 헌법유권해석집(2005년도 총회 회의록 p.111)은 '인지사건도 치리회의 고소에 의해 처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5)
- 라) 헌법유권해석집(1998년도 총회 회의록 p.82)은 '재판위원회가 인지한 사건은 해 치리회에 통보하여 해 치리회의 고소로 심리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도 기소 전에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6)

4) 무고죄

가) 징계법 제7조 2항: 고의로 무근한 사실을 고소할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받 는다고 규정

제7조(고소)

- 2. 고소자는 교회의 신성을 해치거나 교회 내의 불미한 사건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당한 고소를 하여야 하며 만일 고의로 무근한 사실을 고소할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 나) 징계법 제11조: 무고가 드러나면 자동적으로 처벌된다고 규정

4) 2. 징계법 제7조(고소)에 관한 질의입니다(1988/p.122).

재판위원회가 인지한 사건은 재판위원회 결의로 고발자가 되어 본 재판위원회가 직접 심리할 수 있는가요? 해석: 징계법 제7조 1항에 나타난 치리회는 당회, 감찰회, 지방회, 총회를 말하고, 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 이외의 인지된 사건은 인지된 내용을 치리회에 통보하여 치리회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추가 기소하여 처리합니다.

5) 6. 징계법 제7조(고소) 1항에 관한 질의입니다(2005/p.111).

징계법 제7조 1항의 '각급 치리회'가 동법 제3조의 당회, 감찰회, 지방회, 총회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징계법 제7조 1항에서 말하는 '심리하여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느 부서나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요?

- 1) 징계법 제3조 치리회는 행정적인 치리회로 사료됩니다.
- 2) 징계법 제7조 1항에서 말하는 각급 치리회는 심리를 다루는 치리회로서 재판위원회를 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1988년도 제43회 총회 회의록 p.117 제4차 회의의 가항 문 1로 혼란이 왔으나 징계법 제7조 1항에 '심리'라는 의미는 재판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징계법 제7조 1항의 각급 치리회는 재판위원회라 사료됩니다.

해석: 치리회는 당회, 감찰회, 지방회, 총회를 말하며(징계법 제3조,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라항 참조) 인지된 사건을 해당 치리회가 고소자가 되어 고소하면 해당 재판위원회가 심리 처리 합니다(1988/p.122 참조).

6) 7. 징계법 제7조(고소) 1항에 관한 질의입니다(1998/p.82).

징계법 제7조 1항의 '...각급 치리회가 인지한 사건은 고소자가 되어 심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재판위원회가 인지한 사건을 심리를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회가 고소자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재판위원회(고소자)와 피고소자 사이에 징계법 제8조(화해)대로 화해를 시도해 보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 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지 요? 아니면 재판위원회가 인지 심리를 할 때는 징계법 제8조의 화해 절차 없이 심리에 착수해도 되는지요?

해석: 재판위원회가 인지한 사건을 해 치리회에 통보하여 해 치리회의 고소, 고발로 인지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도 기소 전에 화해를 중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무고죄)

고소자가 무고(誣告)의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피소처벌(被訴處罰)된다.

- 다) 헌법유권해석집(1988년도 총회 회의록 p.123)은 '교인이 고발하여 무고의 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재판은 당회 재판위원회에서 처벌한다.' 및 '무고죄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법 제7조와 같이 치리회의 고소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⁷⁾
- 라) 헌법유권해석집(2016년도 총회 회의록 p.171)은 '고발자의 무고의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도 징계법 제7조 1항에 의해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8)

5) 고소 접수 제한

- 가) 징계법 제9조에 고소를 접수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① 평소에 고소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 ② 성격이 불량한 자
 - ③ 피고소자의 처벌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 ④ 징계를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징계 받은 사건과 관련사건일 경우는 고소할 수 없다.
 - ⑤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 ⑥ 지각(知覺)이 부족한 자
- 나) 헌법유권해석집(1988년도 총회 회의록 / p.120)은 '고소접수 제한에 해당하는 자의 고소 접수는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⁹⁾

7) 29. 징계법 제11조(무고죄)에 관한 질의입니다(1988/p.123).

가. 징계법 제11조에서 교인이 당회원을 고발하여 무고의 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재판은 어느 관할에 속하는가 요?

해석: 교인은 당회 재판위원회에서 처벌합니다.

나. 징계법 제11조에 해당된 자는 징계법 제7조와 같이 취급하는가요? 즉결 결심 재판으로 판결하는가요? 해석: 징계법 제7조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8) 31.} 징계법 제11조(무고죄)에 관한 질의입니다(2016/p.171).

징계법 제11조에 '고소자가 무고의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피소처벌(被訴處罰)된다.'에서 고발자의 무고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지방재판위원회 기소위원이 기소했을 때 해당 재판위원회에서 정계할 수 있는지 요?

해석: 징계법 제7조 1항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9) 23.} 징계법 제9조(고소접수제한)에 관한 질의입니다(1988/p.120).

징계법 제9조 '다음에 해당한 자의 고발을 접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에 대하여 접수를 거절

- 다) 헌법유권해석집(2010년도 총회 회의록 / p.87)은 '고소접수는 지방회 임원 회가 접수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방회 임원회 결의로 기각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¹⁰⁾
- 라) 헌법유권해석집(2014년도 총회 회의록 / p.115)은 '고소접수 제한에 해당하는 자의 고소 접수는 지방회 재판위원회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¹¹⁾
- 6) 고소장: 징계법 제12조에 고소자는 피고소자가 위의 징계에 부칠 사건에 해당한 다고 판단되면 교단 행정문서서식 8-9호에 의거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고소장 기록)

고소장에는 피고소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범죄사실과 범행의 일시, 장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7) 상소장

- 가) 징계법 제23조에 상소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헌법유권해석집(2014년도 총회 회의록, p.118 / 2016년도 총회 회의록, p.151)은 '상소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접수한 서류는 효력이 있다.'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¹²⁾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해석: 거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0) 24. 징계법 제9조(고소접수제한)에 관한 질의입니다(2010/p.87).

지방회 임원회가 접수한 고소사건을 징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고소의 건은 접수 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은 적법한지요?

해석: 불법입니다.

25. 징계법 제9조(고소접수제한)에 관한 질의입니다(2010/p.87).

징계법 제9조와 관련하여 고소자가 고소장을 지방회에 접수한 후에 임원회 결의로 기각할 수 있는지요? 해석: 기각할 수 없습니다(2010/p.87 참조).

11) 22. 징계법 제8조(화해) 및 9조(고소접수제한)에 관한 질의입니다(2014/p.115).

교단 헌법 제7장에서 치리회는 당회, 지방회, 총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단 행정문서서식 8-9호 하단에 '치리회: 당회, 지방회, 총회 재판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므로 적용에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징계법 제8조에 '고소를 재판위원회에서 접수하였을 때'에서 치리회는 지방회를 말합니까? 지방회 재판위 원회를 말합니까?

해석: 지방회 재판위원회입니다.

나. 징계법 제9조에 '다음에 해당한 자의 고소를 접수할 때에는'에서 접수는 지방회를 말합니까? 지방회 재판 위원회를 말합니까?

해석: 지방회 재판위원회입니다.

- 다) 또한 상소자는 교단 행정문서서식 8-10호에 의거 상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상소장에는 판결문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 불기소처분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헌법유권해석집 p.408, 20번).13)

나. 재판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1) 재판위원회의 임무: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5항에 재판위원회 위원의 임무와 해임, 장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소)

- 5. 재판위원, 기소위원, 변호위원은 사건 처리에 있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소정기간을 지연 또는 초과하거나 그 임무를 이탈하여 과격한 언동, 욕설, 폭력 등 행위를 자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건심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한 자는 해임, 징계에 처한다.
- 2) 재판위원장의 권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9항에 재판위원장은 재판 진행 중 사건 심리의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소)

9. 재판위원장은 재판진행 중 사건심리의 원만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명령, 휴회, 폐회 등으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법 제23조(상소)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의 10일 기간 중 마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날 접수하였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합법입니다. 익일에 접수한 서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19. 징계법 제23조(상소)에 관한 질의입니다(2016/p.151).

징계법 제23조(상소)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마감일을 정하는 것을 일반사회 법정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16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상소일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접수한 서류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효력이 있습니다.

13) 20.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접수 및 기소)에 관한 질의입니다(1987/p.112).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사건을 총회에 상소할 수 있는지요? 해석: 재판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 2항에 의거 기각이라 할 수 없고 불기소라 할 수 있으되, 해 재판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상소할 수 있습니다.

^{12) 18.} 징계법 제23조(상소)에 관한 질의입니다(2014/p.118).

3) 중벌 및 가중처벌

가) 징계법 제5조 7항에 징계 기간 내에 재범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중 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7. 중벌(重罰)

징계 기간 내에 재범(再犯)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중벌(重罰)할 수 있다.

- 나) 헌법유권해석집(1991년도 총회 회의록, p.154 / 2007년도 총회 회의록, p.101 / 1996년도 총회 회의록, p.201)은 중벌 조항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¹⁴⁾
- 다)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패소자가 재판위원회 판결에 의한 재판비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재판비용)

재판위원회 회부된 사건의 소요비용은 판결에 의하되 패소자가 부담하며 비용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가중 처벌한다.

4) 징계전말 보고

가) 징계법 제21조에 징계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소기간(제23조에 의거 판결

징계 중에 있는 자가 지방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행정을 거부 및 방해하고 범법 행위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요?

해석: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25.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7항(중벌)에 관한 질의입니다(2007/p.101).

정계법 제5조 7항 '징계기간 내에 재범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중벌(重罰)할 수 있다.' 및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재판비용) '재판위원회 회부된 사건의 소요비용은 판결에 의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며 비용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가중처벌 한다.'에서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씨를 재판하여 파직, 출교하였고 정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습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본 상소 사건에 대하여 근신 2년으로 최종 판결하였고, 이후 ○○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위 건에 대해 정계중인 상소인을 '허위 유포, 명예 훼손'을 인지 사건으로 하여 파직, 출교로 가중 처벌하였습니다.

상회 치리회가 재판하여 징계 하에 있는 자를 하회 치리회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요?

해석: 가중 처벌할 수 없습니다.

26.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7항(중벌)에 관한 질의입니다(1996/p.201).

징계법 제5조 7항에 '징계기간 내에 재범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중벌(重罰)할 수 있다.'에 관하여,

- 가. 재범하였을 때 치리회가 중벌 할 수 있는가요? 고발에 의하여 중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나. 중벌 하였을 때 상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해석: 가, 나는 적용법이 없습니다.

^{14) 24.}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7항(중벌) 및 6조(징계의 시행)에 관한 질의입니다(1991/p154).

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이 지난 후 당회는 지방회장에게, 지방 회장은 총회장에게 교단 행정문서서식 7-5호에 의거하여 그 전말을 2주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전말 보고)

징계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지난 후 당회는 지방회장에게, 지방회장은 총회장에게 그 전말을 2주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헌법유권해석집(2011년도 총회 회의록, p.93)은 '징계전말 보고는 보고사항이며, 무효가 될 수 없으며, 해당치리회가 공고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5)

5) 재판 기록 보존

가) 징계법 제22조에 재판위원회는 고소 사건에 대한 재판, 해벌한 기록을 보 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재판 기록 보존)

재판위원회는 고소된 사건의 재판, 해벌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나) 헌법유권해석집(1986년도 총회 회의록, 1986/p.83)은 '재판 기록은 자동 보존되며, 징계법 제20조에 의해 피의자가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 습니다.¹⁶⁾
- 6) 처벌 지시: 징계법 제15조에 상회재판위원회가 하회재판위원회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하회재판위원회가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않으면 상회재판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위원회의 재판기록은 피의자가 보전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가요?

해석: 재판 기록은 자동 보존되며 징계법 제20조에 의해 피의자가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15) 21.} 징계법 제19조(판결공고), 제21조(징계전말보고) 및 제23조(상소)에 관한 질의입니다(2011/p.93).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사건을 상소기간이 지난 후 지방회장이 총회장에게 징계전말을 보고하였습니다. 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사건을 상소기간이 지난 후 그 징계전말을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2주일 내에 총회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지방회에서 확정된 재판의 건은 결재사항인가요? 전말보고 사항인가요? 해석: 징계법 제21조 징계정말보고 사항입니다.

나.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사건을 상소기간이 지난 후 그 징계전말을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2주일 내에 총회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총회장이 징계전말 보고를 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요? 해석: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사건을 상소기간이 지난 후 그 징계전말을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2주일 내에 총회장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징계사실을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확정판결하고 공고 할 수 있는지요? 해석: 해당 치리회가 공고합니다(1997/p.101 참조).

^{16) 25.} 징계법 제22조(재판기록보존)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15조(처벌 지시)

상회재판위원회가 하회재판위원회에 지시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재판위원회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재판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

7) 징계의 종목과 내용

가) 징계법 제5조에 징계의 종목은 근신, 정직, 면직, 파직, 출교, 추징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1. 근신(謹愼)

최고 2년 이하이며, 본 교회의 모든 회원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2. 정직(停職)

최고 2년 이하이며, 성찬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 지한다. 징계기간 중의 사례비를 감할 수도 있다.

3. 면직(免職)

무기(無期)이니 성찬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를 정지하며 징계와 동시에 모든 급여는 중지된다.

4. 파직(罷職) 칭호상실

무기(無期)이니 교역자 및 교직자는 성찬참여권과 시무직과 권한 일체가 정지되며 칭호가 박탈되고 평교인이 된다.

5. 출교(黜敎)

본 교회에서 제명되며 4년 이내에는 복권되지 못한다.

6. 추징(追徵)

이상 각항에 해당되는 범행으로 인하여 교회재산(동산, 부동산)에 대한 부정이 있을 시는 병과추징(倂科追懲)할 수 있다.

나) 징계종목에 대해서는 헌법유권해석집(1988년도 총회 회의록, p.124 외 12 건)에서 총 13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¹⁷⁾

17) 11.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1988/p.124).

징계법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 제43조 5항 카호의 '무흠'에 저촉되는지요? 해석: 저촉됩니다.

12.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2005/p.121).

징계법 제5조 1~5항은 '1. 근신, 2. 정직, 3. 면직, 4. 파직 칭호상실, 5. 출교'로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회 재판제도와 다른 것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징계법이 정한 사항만 재판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재판처럼 지방회 재판위원회나총회 재판위원회가 위 징계법 제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외에 징계의 종목에도 없는 원심의 취소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 재판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해석: 무효입니다.

13.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1990/p.139~140).

1년간 근신 처벌받은 집사가 고소(고발)할 수 있는지요?(징계법 제5조 및 9조 참조) 해석: 징계법 제5조의 각항에 의하여 처벌 중에 있는 자는 고소(고발)할 수 없습니다.

14.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에 관한 질의입니다(1988/ p.124).

징계법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 제41조 1항 다호, 7항, 헌법 43조 4항 카호의 근속에 징계기간을 통산하는가요? 감산하는가요? 해벌, 복권된 때부터인가요?

해석: 해벌, 복권된 때부터입니다.

15.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1항(근신)에 관한 질의입니다(2001/p.113).

징계법 제5조 1항에 '본 교회의 모든 회원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피고에게 근신 6개월을 주문하면서 근신기간 중 회원권 일부만(정기예배의 설교) 허락하였다면 치리목사를 파송해야 합니까?

해석: 파송해야 합니다.

16.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1항(근신)에 관한 질의입니다(2015/p.135).

모 교회 장로 3인은 총회재판에서 '교회 부속시설 및 재산(권)에 대하여 환원조치 및 법대로 이행하라'는 주문과 함께 근신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3인 중 2인은 교회 부속시설 및 재산에 대한 불법 관리운영주체의 친인척이자 현재 일부 교회재정장부와 입출금 은행통장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전.현직 재정부장입니다. 교회부속시설(요양원)은 해당교회의 공적인 승인 없이 대표자가 담임목사로부터 일반인에게 변경된 채 수년간 교회와 상관없이 운영되어왔습니다. 위 총회재판 판시에 따라 해당교회 치리목사가 관련당사자들에게 재산 환원조치 및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행정진행에 대하여 위 근신 징계처분을 받은 3인은 자신들은 당회 회원권이 있다며, 당회에서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교회 당회 정족수는 근신징계 중에 있는 3인과 다른 2인(담임목사 1인, 선임장로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위 상황에서 재산환원(교회 부속시설 대표자 명의 변경)과 재산반환(재정장부 및 입출금 은행통장)은 환원 및 반환해야 할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입니까? 당회결의로 환원 및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사항입니까?

해석: 환원 및 반환해야 할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위 상황에서 3인은 징계기간 중 당회 회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없습니다.

17.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1항(근신)에 관한 질의입니다(2015/p.144).

징계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근신은 최고 2년 이하이며, 본 교회의 모든 회원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근신 6월을 선고받은 장로들은(근신 6월만 선고받았을 뿐, 본 교회의 회원권에 대하여 정지받은 바 없음) 근신 6개월의 징계 기간 동안에 장로로서 당회원의 자격을 포함한 본 교회의 회원권의 자격이 있습니까?

해석: 있습니다.

나. 또한 위의 경우(근신 6월만 선고받았을 뿐, 본 교회의 회원권에 대하여는 일절 정지 받은 바 없음) 징계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도 별도로 해벌복권을 신청해야 합니까? 위와 같은 경우 이미 내려진 유권해석에 의하면 징계기간 만료시 자동복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유권해석(2008년 5월 25일자 p.216, 6장해벌 및 복권(24조)). 징계법 제24조 1항, 2항-각급 재판위원회가 재판한 사건의 징계기간 만료시 (1984/p70~71) 가. 자동 해벌복권이 되는지요? 해석: 징계기간 중 이의 없이 징계를 감수한 자는 자동 해벌복권이 되며,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제24조 1항에 의거 해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석: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 때 2008년도 유권해석을 근거하여(근신 6월만 선고받았을 뿐, 본 교회의 회원권에 대하여는 일절 정지 받은 바 없음) 현재 근신 6월을 받은 장로들에게 '자동복권이 된다'라고 법리를 적용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합법입니다.

장계법 제5조(장계의 종목과 내용) 1항(근신)에 관한 질의입니다(2016/p.168).

최근 지방회 내 모교회 담임목사가 총회재판위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문-근신 5개월(단 사례비 중 본봉 10%를

8) 사건의 이송

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3항 라호에 의하면, 재판위원회는 기소사건이

5개월간 감봉하고 그 외 목회활동은 제한하지 않는다)-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회에서는 후속처리를 위하여 두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징계법 제5조 1항에 근신은 '최고 2년 이하이며, 본 교회의 모든 회원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신 5개월을 선고받은(단, 사례비 중 본봉 10%를 5개월간 감봉하고 그 외 목회활동은 제한하지 않는다) 경우, 치리목사를 파송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치리목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19.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2항(정직)에 관한 질의입니다(1988/p.126~127).

가. 징계법 제5조 2항에 '최고 2년 이하이며, 성찬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라고 규정되었는데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1년 정직 처분된(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으므로 확정됨) 사람이 헌법 제75조(부서) 1항(항존부서) 나호(당시 헌법 2호)의 재판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권한(위원 자격)이 계속 되는지요?

해석: 계속될 수 없습니다.

나. 또는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면 자동해직인지요? 권고사직인지요?

해석: 자격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자동해직도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다. 위원 자격이 정지 된다면 보선을 해야 하는가요?

해석: 보선하여야 합니다.

라.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면 해벌 후에는 다시 존속이 되는지요?

해석: 존속되지 않습니다.

20.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2항(정직)에 관한 질의입니다(1989/p.144).

본 교단 ○○교회 ○○○목사는 ○○○○년 ○월 ○일자로 총회 재판부에서 정계법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정직 1년을 선고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년 ○월 ○○일자로 본 교단을 탈퇴성명을 발표하였으므로 본 교단에서는 ○○○○년 ○월 ○○일자로 ○○○목사를 정계법 제5조 5항 및 6항에 의거, 파직 출교 처분하였으며 본 지방회에서는 ○○○○년 ○월 ○○일자 지방회 공천부에서 헌법 제48조 2항에 의거 치리목사를 파송하였는데 이에 치리권과 당회가 구성되는지요?

해석: ○○○목사와 교회가 탈퇴하였을 때에는 치리권 행사나 당회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단 총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 합니다).

21.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3항(면직)에 관한 질의입니다(1997/p.107).

가. 면직된 상태에서 교단을 탈퇴할 경우 탈퇴가 인정되는지요?

해석: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 탈퇴가 인정될 경우 목사 호칭을 할 수 있는지요?

해석: 목사 호칭은 할 수 있습니다(징계법 제5조 4항 참조).

다. 탈퇴한 자가 타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해석: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 면직된 자가 지방회 무임목사가 될 수 있는가요?

해석: 무임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헌법 제43조 4항 차호 참조).

22.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3항(면직)에 관한 질의입니다(2003/p.83~84).

징계법 제5조 3항(면직) '무기이니 성찬 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를 정지하며 징계와 동시에 모든 급여 은 중지된다.'라고 명시된바 면직은 무기로 징계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으로 파직 출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4년 이내라도 위원회(치리회)의 결의로 해벌 복권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4년이 경과되어도 무기이기 때문에 해벌 복권이 불가능한지요?

해석: 징계법 제24조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무기는 기한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23. 징계법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5항(출교)에 관한 질의입니다(2002/p.79).

출교된 교역자가 징계기간 중 강단에서 설교 또는 축도를 하였다면 적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해석: 불법입니다. 관할이 아닐 때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또는 치리회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2조(총칙)

- 3. 라. 기소사건이 재판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의 해당 재판위원회에 또는 치리회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 나) 헌법유권해석집(2003년도 총회 회의록, p.109)은 '고소 접수된 사건은 해당 치리회로 이송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¹⁸⁾

^{18) 18.}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총칙) 3항 라호에 관한 질의입니다(2003/p.109).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3항 라호에 의거 총회 임원회가 고소 접수된 사건을 총회 재판위원회가 아닌 지방 회 재판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는지요?

해석: 해당 치리회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방회 재판위원회 절차

절 차	담 당	소요기간	해 당 법 규	참 고 사 항
고 소 장 접 수	지방회 서기	즉시	운영규정 제3조 1항	지방회 접수
재 판 위 원 회 회 부	재판위원장	지방회 서기 접수 후 10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1항	재판위원회 접수
재 판 위 원 회 소 집	재판위원장	재판위원회 접수 후 2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2항	1. 과반수 동의로 처리 2. 재판비용 및 기한 결정 후 통보 3. 차기 회의일자 결정(재판비용마감일 다음날로 소집)
재 판 위 원 회 소 집 (1 차)	재판위원장	처리 결정 후 통상 2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2항	1. 재판비용납부 확인 후 재판시작 2. 재판진행은 재판비용을 공탁한 날로부터 기산함 3. 화해기간 및 화해위원 결정 4. 차기 회의일자 결정(화해기간 미치는 일자로 소집)
화 해 기 간	재판위원회	3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유권해석 16항 (p.352)	1. 화해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재판기간 중 상회에 질의를 요할 경우 재판위 중지결의에 의해 재판기간이 공제됨
재 판 위 원 회 소 집 (2 차)	재판위원회	기소조사기간 3주 (1주 연장)능)	운영규정 제3조 3항	1. 기소위원이 기소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의 2. 3주 후로 차기 회의일자 결정
기 소 조 사	기소위원	기소조사 3주 (1주 연장)능, 행서 8-12)	운영규정 제3조 6, 8항	1. 대면조사 원칙 2. 기소장 작성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소속교회, 교직, 죄과 등을 명시, 행서 8-11)
재 판 위 원 회 소 집 (3 차)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3, 4, 6항	1. 기소위원의 기소강 제출 후 기소여부 결정 (최과의 혐의가 없고 정상이 양호시 재판위원회 동의로 불기소 결정, 행서 8-11) 2. 변호위원 조사 시작 3. 차기회의(개심) 일자 결정 (5주 내에 판결을 종료하여야 하므로 5주 안에 2회 개심일을 결정)
고 소 장 부본 송부	재판위원장	7일이내 원, 피고와 변호인에게 교부	운영규정 제3조 7항	고소장 부본을 송부
변 호 조 사	변호위원	기소장 접수일로부터 개심일까지	운영규정 제4조	피고소자는 당년 지방회, 총회대의원 중에 1명의 변호위원을 재판위 허락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재 판 위 원 회 소 집 (4 차) (1 차 개심)	재판위원장	기소장 접수일로부터 4주 후에 소집	운영규정 제5조1, 2, 4항	 고소장, 죄증설명서 낭독 및 교부 기소장 낭독 변호의견 진술 피고소자 변명 및 변론진술
판결문 준비	판결위원	2차 개심 전까지	운영규정 제5조 3항	1차 개심 시 기소 및 변호 그리고 피고소자의 변론을 듣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준비
재 판 위 원 회 소 집 (5 차) (2 차 개심)	재판위원회		징계법 제5, 16, 17조 운영규정 제6조	 죄과사실이 충분할 때 - 징계법 제5조 징계의 종목 중에서 판결 판결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 혐의인정이 안될 경우 - 재판위원회 합의로 기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
판 결 문 송 달	재판 서기		징계법 제20조 운영규정 제5조 8항	지방회장과 재판위원장 연서로 당시자에게 서면으 로 송달
징 계 전 말 보 고	재판위원장	판결 후 2주 내에	징계법 제21조	총회장에게 보고(행서 7-5)
판 결 공 고	재판위원회	총회보고 확정 후	징계법 제19조	위원회 결의로 그 범위를 결정

총회 재판위원회 절차

절 차	담 당	소요기간	해 당 법 규	참 고 사 항
상 소 접 수	사무국	즉시	징계법 제23조	판결문(불기소처분 포함) 송달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상소가능
재 판 위 원 회 회 부	사무국	접수 후 10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1항	총회장 결재 후에 10일 이내
재 판 위 원 회 소 집	재판위원장	재판위원회 접수 후 2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2항	1. 과반수 동의로 처리 2. 재판비용 및 기한 결정후 통보 3. 차기 회의일자 결정(재판비용미감일 다음날로 소집)
재 판 위 원 회 소 집 (1 차)	재판위원장	처리 결정 후 통상 2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2항	1. 재판비용납부 확인 후 재판시작 2. 재판진행은 재판비용을 공탁한 날로부터 기산함 3. 화해기간 및 화해위원 결정 4. 차기 회의일자 결정(화해기간 마치는 일자로 소집)
화 해 기 간	재판위원회	3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유권해석 16항 (p.352)	1. 화해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2. 재판기간 중 상회에 질의를 요할 경우 재판위 중지결의에 의해 재판기간이 공제됨
재 판 위 원 회 소 집 (2 차)	재판위원회	기소조사 기간은 5주이며 2주 연장가능	운영규정 제3조 3항	1. 기소위원이 기소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의 2. 5주 후로 회의일자 결정
기 소 조 사	기소위원	5주 (2주 연장)능, 행서 8-12)	운영규정 제3조 6, 8항	 대면조사 원칙 기소장 작성(성명, 연령, 주소, 직업, 소속교회, 교 직, 죄과 등을 명시, 행서 8-11)
재 판 위 원 회 소 집 (3 차)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3, 4, 6항	 기소위원의 기소장 제출 후 기소여부 결정 (행서 8-11) 변호위원 조사 시작 차기회의(개심) 일자 결정 (5주내에 판결을 종료하여야 하므로 5주 안에 2회 개심일을 결정)
고소장 부본 송 부	재판위원장	7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7항	원, 피고와 변호인에게 고소장 부본을 송부
변 호 조 사	변호위원	기소장 접수일로부터 개심일까지	운영규정 제4조	피고소자는 당년 지방회, 총회대의원 중에 1명의 변호위원을 재판위 허락으로 선임
재 판 위 원 회 소 집 (4 차) (1 차 개심)	재판위원장	기소장 접수날로부터 4주 후에 소집	운영규정 제5조 1, 2, 4항	 고소장, 죄증설명서 낭독 및 교부 기소장 낭독 변호의견 진술 피고소자 변명 및 변론진술
판결문 준비	판결위원	2차 개심 전까지	운영규정 제5조 3항	1차 개심에 기소 및 변호 그리고 피고소자의 변론 을 듣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준비
재 판 위 원 회 소 집 (4 차) (2 차 개심)	재판위원회		징계법 제5,16,17조 운영규정 제6조	 죄과사실이 충분할 때 - 징계법 제5조 징계의 종목 중에서 판결 판결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 혐의인정이 안될 경우 - 재판위원회 합의로 기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
판결문 송달	재판 서기		징계법 제20조 운영규정 제5조 8항	총회장과 재판위원장 연서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
판 결 공 고	재판위원회	판결 및 총회장 결재 후	징계법 제19조	위원회 결의로 그 범위를 결정

5. 해벌 및 복권

- 가. 의미: 해벌(解罰)은 "벌을 풀어준다"라는 뜻이고 복권(復權)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번 상실한 자가 이를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법 제5조 징계 종목의 판결(근신, 정직, 면직, 파직, 출교, 추징, 중벌)로 징계를 받은 자는모든 회원권 및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벌 및 복권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단, 근신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해벌 복권된다.
- 나. 대상자: 징계 하에 있는 자(헌법 제89조 1항)
- 다. 자격: 확실한 회개의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징계법 제24조)

제24조(해벌 및 복권)

해벌과 복권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징계를 받은 자로서 확실한 회개의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치리회로 하여 금 해벌 또는 복권청원서를 상회에 제출하면 해당 재판위원회는 조사 심의하여 처리한다.
2. 해벌 또는 복권된 자는 해 치리회가 본인과 해 지교회, 해 지방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절차(징계법 제24조 1항)

- 1)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해 지교회로 하여금 해벌 또는 복권 청원서를 지방회에 제출하면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조사 심의하여 처리
- 2)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지방회로 하여금 해벌 또는 복권청원 서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 재판위원회가 조사 심의하여 처리

마. 결과 통보(징계법 제24조 2항)

해벌 또는 복권된 자는 해벌 또는 복권을 조사 심의한 재판위원회가 본인과 해 지교회, 해 지방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바. 해벌 및 복권에 대한 유권해석

1) 징계법 제24조(해벌 및 복권)에 관한 질의입니다(1998/p.83).
 징계법 제24조 1항과 2항의 '치리회'는 당회, 감찰회, 총회의 임원회를 의미합니까?
 나까? 아니면, 당회, 감찰회, 총회의 재판위원회를 의미합니까?

해석: 해벌과 복권은 치리한 해당 치리회(재판위원회)를 말합니다.

2) 징계법 제24조(해벌 및 복권)에 관한 질의입니다(2019년도 총회 보고서 p.45-46).

원로장로로 징계를 받은 OOO씨는 개인자격으로 직접 지방회에 복권청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지방회에 복권청원을 해야 합니까?

해석: 해지교회가 지방회에 복권청원을 해야 합니다.

사. 관련서식

행정서식 3-31 - 지교회/지방회용 행정서식 7-6 - 지방회/총회용

6. 사면 및 기록말소

- 가. 의미: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이란 뜻으로 통상 국가적으로 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사면대상자의 소속된 당회결의로 건의, 지방회 임원회와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결의 및 건의를 총회 재판위원회가 심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건의하면 총회장이 사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록말소란 것은 "재판기록을 없애 버린다"는 뜻으로 교단 헌법에서는 징계사실이 있던 자가 원로목사나 원로장로의 '무흠'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현실이다.
- 나. 대상 및 자격(헌법 제90조): 징계 받은 자가 징계 중 회개의 정이 확실하고 지교회나 교단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90조(사면)

징계 받은 자가 징계 중 회개의 정이 확실하고 지교회나 교단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해당 치리회와 재판위원회 건의로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장이 사면할 수 있 다. 단, 기록말소도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다. 절차(헌법 제90조, 유권해석집 p.296 2번): 현 소속 지방회 임원회 및 재판위원 회의 건의로 총회 재판위원회 심의 후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장이 사

면할 수 있다. 단, 기록말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19)

마. 관련서식: 행정문서서식 7-7

^{19) 2.} 헌법 제90조(사면)에 관한 질의입니다(1999/p.121-122).

헌법 제90조에 '징계 받은 자가 징계 중 회개의 정이 확실하고 지교회나 교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해당 치리회와 재판위원회 건의로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장이 사면할 수 있다. 단, 기록 말소도 위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치리회인 지방회를 경유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의 건의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 에 따라 총회장이 사면 및 기록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끝난 사건을 사면 및 기록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치리회인 지방회와 지방회 재판위원회 건의로 하면 되는지요?

나. 만일 해당 치리회인 지방회와 지방회 재판위원회 건의로 하게 될 경우 지방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건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건의하면 되는지요? 또한 총회 재판위원회의 건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요?

해석: 가, 나는 현 소속 지방회 임원회 및 재판위원회 건의로 총회 재판위원회 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건의 합니다.

강의 2

지방회 및 총회 재판 절차

- 1. 고소장 및 상소장 접수
- 2. 지방회 및 총회 재판위원회 소집
- 3. 화해 조정
- 4. 기소
- 5. 재판

이기수 목사

전 헌법연구위원장 전 법제부장 만석교회 담임목사

1. 고소장 및 상소장 접수

가. 고소장 접수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1항에 고소장 접수에 대해 고소자는 교단 행정문서 서식 8-9호에 의거 고소장을 작성한 후 1심인 소속 지방회 서기에게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지방회 서기는 접수한 고소장을 임원회를 거쳐 지방회 재판위원 회에 10일 이내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소장 접수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1항에 상소장 접수에 대해 상소자는 교단 행정문서 서식 8-10호에 의거 상소장을 작성한 후 최종심인 총회 사무국에 상소장을 접수 해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접수한 고소장을 최종결재권자인 총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총회 재판위원회에 10일 이내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소)

1. 고소장과 상소장의 접수는 당회는 당회 서기, 지방회는 지방회 서기, 총회는 사무국에서 접수하며 접수한 서류는 해당 재판위원회에 10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지방회 및 총회 재판위원회 소집

가. 지방회 재판위원회 소집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에 지방회 재판위원장은 고소사건 접수 시는 접수일로부터 2주일 내에 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사건이 접수 처리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며, 고소자에게는 사건 접수 결과와 기일 내에 재판비용 공탁을 문서로 통보하고, 피고소자에게도 사건접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재판진행은 재판비용이 공탁된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총회 재판위원회 소집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에 총회 재판위원장은 상소사건 접수 시는 접수 일로부터 2주일 내에 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사건이 접수 처리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며, 상소자에게는 사건 접수 결과와 기일 내에 재판비용 공탁을 문서로 통보하고, 피상소자에게도 사건접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재판 진행은 재판비용이 공탁된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소)

2. 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소 및 상소사건을 접수 시는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사건접수 처리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고소자와 피고소자에게 사건접수 되었음을, 고소자에게 기일내 재판비용공탁을 문서로 통보하며 재판진행은 재판비용을 공탁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3. 화해 조정

가. 징계법 제8조에 의하면, 재판위원회는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재판에 들어가 기에 앞서 먼저 고소자와 피고소자 간에 화해를 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재판 심리에 착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화해)

고소를 재판위원회에서 접수하였을 때는 고소자로 하여금 먼저 피고소자와 화해를 권하며 이 기간은 심리에 착수하지 않는다.

- 나. 그러나 기소가 되어 심리가 시작된 후에는 화해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동 헌법 유권해석집(1998년도 총회 회의록 p.82) 15번에서 화해의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 참조²⁰⁾).
- 다. 그리고 동 헌법유권해석집(2001년도 총회 회의록 p.110-111) 18번에서 재판위 원회 심리 개시 선언 이후에는 조정기간을 가질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 다.²¹⁾

20) 15. 징계법 제8조(화해)에 관한 질의입니다(1998/p.82).

징계법 제8조(화해)에는 '고소를 재판위원회에서 접수하였을 때'를 화해의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재판 절차) 1항에서는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 재판위원회가 화해를 시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화해의 시점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재판 위원회가 화해를 시도해야 할 시점은 어느 때입니까? 즉 재판위원회가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때(징계법 제8조)입니까? 아니면 사건이 기소위원의 조사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을 때(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호 1항)입니까?

해석: 피해자의 고소를 치리회에서 접수하여 기소위원이 화해를 종용할 때가 화해기간이며 기소위원이 재판위원에 기소시점에서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21) 18. 징계법 제8조(화해)에 관한 질의입니다(2001/p.110~111).

본 지방회의 재판위원회는 심리개시 선언 후 조정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징계법 제8조 및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1항에 의해 적법한지요? 적법하다면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지요?

해석: 재판위원회 심리개시 선언 후는 조정기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 또한 동 헌법유권해석집(2000년도 총회 회의록 p.92 / 1990년도 총회 회의록 p.141) 16번에 의하면 화해 조정 기간은 5주의 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²²⁾

4. 기소

가. 기소조사

1) 징계법 제13조에 재판위원회는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기소위원에게 넘 겨 기소조사하고 기소여부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기소 여부 처리)

재판위원회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기소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 기소여부를 처리한다.

2)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8항에 피고소자가 이유 없이 기소위원의 조사에 불응할 때에는 고소장과 증거조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소)

8. 피고소자가 이유 없이 기소위원의 사건조사에 불응할 때에는 고소장과 증거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3)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3항에 기소위원은 기소 조사 후 총회 재판위원회는 5주내(지방회 재판위원회는 3주내)에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며, 기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단 행정문서서식 8-12호(별지)에 의거 재판위원장에게 총회 재판위원회는 2주일간(지방회 재판위원회는 1주일간)의 기소연장보고를 요청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16.} 징계법 제8조(화해)에 관한 질의입니다(2000/p.92, 1990/p.141).

조정위원회의 화해 조정기간이 종료됨으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1항, 2항에 의거 재판진행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화해를 위하여 제45회 교단 총회(1990년 4월 23일~26일. 총회록 p141)에 보고된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거 재판위원회의 자체 내에서 화해를 종용코자 하는 바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인지요?

해석: 징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 조정기간을 공제 처리하여야 합니다. 화해조정기간은 5주의 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기소위원의 기소기간과 같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기소)

3. 기소위원은 재판위원회에서 회부된 사건을 접수 시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후 징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죄과가 인정되면 5주내(지방회는 3주내)에 기소하고 죄과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고 정상이 양호할 때에는 불기소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판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기소위원은 사건 조사상 부득이 할 때에는 재판위원장에게 연장 보고하고 2주일간(지방회는 1주일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소장

1)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6항에 기소위원은 기소조사를 하여 기소를 할 경 우에는 교단 행정문서서식 8-11호(별지)에 의거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소)

6. 기소는 기소위원이 조사한 기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소장에는 피고소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소속교회, 교직 교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7항에 재판위원회는 기소장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고소장 부본을 고소자 및 피고소자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지방회재판위원회)을, 상소장 부본을 상소자 및 피상소자와 변호인에게(총회 재판위원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소)

7. 기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위원회는 7일 이내에 고소장 부본을 원.피고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재판

가. 재판

1) 개심 선언

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1항에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 재판위원회는 징 계법 제8조에 해당한 화해기간이 지나면 재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소자를 소 화하여 개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재판절차)

- 1.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 재판위원회는 징계법 제8조에 해당한 화해기간이 지나면 재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소자를 소환하여 개심하여야 한다.
- 나) 징계법 제10조에 재판위원회는 심리 개시 전에 고소자에게 '고소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벌하겠다.'고 선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리 개시 선언)

재판위원회는 심리 개시(개시)하기 전에 고소자에게 경계하되 (고소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벌하겠다)고 선언한다.

다) 징계법 제16조에 재판위원회는 고소사건을 개심하면 개심을 선언하고 고소 장을 낭독하고 고소장을 피고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심 선언)

재판위원회는 고소된 사건을 개심하면 개심을 선언하고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낭독하고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사본을 피고소자에게 교부한다.

2) 기소장 낭독

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2항에 교부가 끝이 나면 기소위원은 기소장을 낭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재판절차)

2. 개심되어 재판위원회가 징계법 제16조에 의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낭독 및 교부가 끝나면 기소위원은 기소장을 낭독한다.

3) 변호

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 2, 3, 4항에 변호위원은 피고소자를 위하여 사건의 정상을 규명하고 죄과에 대한 반증을 수집 조사하여 피고소자에게 유리한 변호를 하도록 힘써야 하며, 피고소자는 사건 변론을 위해 당년 지 방회, 총회 대의원 중에서 1명의 변호위원을 재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선 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

- 1. 변호위원은 피고소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피고소자와 변호위원은 사실 및 증거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소 및 재판위원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변호위원은 사건의 정상을 규명하고 죄과에 대한 반증을 수집 조사하므로써 유리한 변호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
- 4. 피고소자는 사건 변론을 위해 당년 지방회, 총회 대의원 중에서 1명의 변호위원을 재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 나) 또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4항에 재판위원회는 재판을 종결하기 전에 피고소자와 변호위원에게 충분한 변명과 변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재판절차)

4. 재판위원회는 재판을 종결하기 전에 피고발자와 변호위원에게 충분한 변명과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궐석재판

가) 징계법 제17조에 피고소자가 재판위원회의 요청에 이유 없이 2차 재판에 도 불응하면 재판위원회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궐석재판)

피고소자는 재판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에 응할 것이요, 만일 요청을 받고도 이유 없이 2차 재판에도 불응하면 재판위원회는 궐한 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처리한다.

나)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2항에 궐석재판을 할 경우에는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의 의견을 듣고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재판절차)

3. 피고소자가 재판을 위한 소환에 2회까지 불응하여 징계법 제17조에 의한 궐석재판을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한 후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의 의견을 듣고 판결한다.

5) 즉시 처결

징계법 제18조에 재판위원회는 피고소자가 재판석상에서 범죄사실을 자인할 때는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조사하여 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즉시 처결)

피고소자가 재판석상에서 범죄사실을 자인할 때는 재판위원회는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조사하여 처결할 수 있다.

6) 판결

가) 판결문 작성

판결문은 교단 행정문서서식 8-13호에 의거하여 사건명, 사건번호, 고소자 및 피고소자(지방회 재판위원회), 상소자 및 피상소자(총회 재판위원회), 기소일자, 심판종결일자, 주문, 판결이유, 적용법조문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판결문 송달
- (1) 징계법 제20조에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고소자와 피고소자(지방회 재판위원회)), 상소자 및 피상소자(총회 재판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판결문 송달)

재판위원회는 고소한 사건을 재판하면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2) 또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8항에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지방회에서 재판한 판결문은 지방회장과 재판위원장 연서로, 총회에서 재판한 판결문은 총회장과 재판위원장 연서로 고소자와 피고소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되

어 있습니다.

제5조(재판절차)

8. 징계법 제20조에 의하여 판결된 판결문은 이유를 명시하고 총회장, 지방회장과 재판위 원장 연서로 원.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 판결문 공고

징계법 제19조에 재판위원회가 판결한 판결문의 공고는 위원회의 결의로 그 범위를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판결 공고)

재판위원회가 판결한 징계사실을 대내외에 공고할 시는 위원회의 결의로 그 범위를 결정 공고한다.

7) 재판 종결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4항에 판결위원(재판위원)은 기소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주일 내에 재판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소)

4. 재판위원은 기소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주일 내에 재판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나, 징계전말 보고

1) 징계법 제21조에 징계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소기간(제23조에 의거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이 지난 후 당회는 지방회장에게, 지방회장은 총회장에게 교단 행정문서서식 7-5호에 의거하여 그 전말을 2주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전말 보고)

징계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지난 후 당회는 지방회장에게, 지방회장은 총회장에게 그 전말을 2주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벌 및 가중처벌

1) 징계법 제5조 7항에 징계 기간 내에 재범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중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징계의 종목과 내용)

7. 중벌(重罰)

징계 기간 내에 재범(再犯)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중벌(重罰)할 수 있다.

2)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패소자가 재판위원회 판결에 의한 재판비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재판비용)

재판위원회 회부된 사건의 소요비용은 판결에 의하되 패소자가 부담하며 비용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가중 처벌한다,

■ 지방회 재판 절차 흐름도 ■

절 차	담 당	소요기간	해 당 법 규	참 고 사 항		
고 소 장 접 수	지방회 서기		징계법 제7조 1항 징계법 제14조 운영규정 제3조 1항	* 당회원 사건은 지방회에서 접수 * 서기는 접수된 고소장은 임원회를 거쳐 재판위원회로 회부		
재판위원회 회 부	재판위원장	10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1항	* 재판위원장은 재판위원회 소집		
			D			
재판위원회 소 집	재판위원장	2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2항	* 사건번호와 사건명 부여 * 고소자 및 피고소자에게 사건접수 통보 * 고소자에게 재판비용 납부기일 지정 통보		
			D			
화 해 조 정	재판위원회	3주	징계법 제8조 유권해석 p352. 16번	* 재판비용 납부 확인 후 재판 시작		
기 소 조 사	기소위원	3주	징계법 제13조 운영규정 제3조 3항	* 1주 연장 가능		
			D			
개 판	판결위원	5주	징계법 제16조 운영규정 제3조 4항	* 기소장 제출 시 7일 이내 고소장 부본 원·피고와 변호인에게 교부		
변 호	변호위원		운영규정 제4조, 제5조 4항	* 피고소자, 변호위원에게 의견 진술 및 충분한 변론 기회 부여		
궐 석 재 판	판결위원		징계법 제17조 운영규정 제5조 3항	* 2차 불응 시 궐석으로 재판 진행 * 기소위원, 변호위원 의견 청취 후 판결		
즉 시 처 결	판결위원		징계법 제18조	* 피고소자가 범죄사실을 자인할 때 는 조사 즉시 처결		
판 결	판결위원		징계법 제19조, 20조 운영규정 제8조	* 판결문은 지방회장과 재판위원장 연서로 원·피고에게 송달		
징 계 전 말 보 고	재판위원장	2주 이내	징계법 제21조	* 상소기간(판결문 송달된 다음날부 터 10일)이 지난 후 지방회장은 총회 장에게 보고		

■ 총회 재판 절차 흐름도 ■

절 차	담 당	소요기간	해 당 법 규	참 고 사 항		
상 소 장 접 수	총회 사무국		징계법 제7조 1항 징계법 제14조 운영규정 제3조 1항	* 상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임 * 사무국은 접수된 상소장을 총회장 결재 후 재판위원회로 회부		
재판위원회 회 부	개판위원장	10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1항	* 총회장 결재를 득한 후부터 기일 계산 * 재판위원장은 재판위원회 소집		
			D			
재판위원회 소 집	재판위원장	2주 이내	운영규정 제3조 2항	* 사건번호와 사건명 부여 * 상소자 및 피상소자에게 사건접수 통보 * 상소자에게 재판비용 납부기일 지 정을 문서로 통보		
화 해 조 정	재판위원회	5주	징계법 제8조 유권해석 p352. 16번	* 재판비용 납부 확인 후 재판 시작		
			D			
기 소 조 사	기소위원	5주	징계법 제13조 운영규정 제3조 3항	* 2주 연장 가능		
재 판	판결위원	5주	징계법 제16조 운영규정 제3조 4항	* 기소장 제출 시 7일 이내 고소장 부본 원·피고와 변호인에게 교부		
변 호	변호위원		운영규정 제4조, 제5조 4항	* 피고소자, 변호위원에게 의견 진술 및 충분한 변론 기회 부여		
궐 석 재 판	판결위원		징계법 제17조 운영규정 제5조 3항	* 2차 불응 시 궐석으로 재판 진행 * 기소위원, 변호위원 의견 청취 후 판결		
즉 시 처 결	판결위원		징계법 제18조	* 피고소자가 범죄사실을 자인할 때 는 조사 즉시 처결		
판 결	판결위원		징계법 제19조, 20조 운영규정 제8조	* 판결문은 총회장과 재판위원장 연 서로 원·피고에게 송달		

강의 3

교회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 1. 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 2.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 3. 부목사 전도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 4. 사택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5. 종교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6.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 7. 은퇴목사의 후임목사 청빙에 관한 권한
- 8. 총회 헌법과 지교회 정관의 효력
- 9. 교회분열 시 교회 재산 소유
- 10. 교단 탈퇴

김명종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사법학과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한빛, 장원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법률사무소 지킴(현)

1. 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가. 공동소유의 종류 : 공유, 합유, 총유

- (1) 비법인사단
- (2)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의 예 : 자연부락, 종중, 사찰, 교회

나. 총유의 법률관계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판례문헌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좋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 된다.

2.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가. 유지재단에 대한 명의신탁

예배행위를 그 존립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는 교회건물(예배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어서 교회건물이 없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

태어 볼 때, 위 교회가 그 교회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그 소유권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침례회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침례회의 가입회원으로서의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침례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위 교회는침례회로부터 탈퇴는 하면서도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예배장소는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2000. 6. 9. 선고 판결)

나. 명의신탁의 문제점 : 제3자에 대한 효력

3. 부목사 전도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가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에게 지급된 금원도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나. 근로자성 부인의 문제점: 판례 변경의 필요성 및 가능성

- (1) 해고
- (2) 최저임금

(3) 근로소득세

4. 사택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임시목사로서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원고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할 목적으로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것이라면 원고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나. 담임목사 사택

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재산

5. 종교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교회의 권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 및 출입 방해 금지 등 가 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1727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9012 판결)

다. 갑 교단 소속의 을 교회가 병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갑 교단의 하급 치리회인 노회에서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는데, 갑 교단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및 병에 대한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을 하자 을 교회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과 병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교회는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됨으로써 병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을 교회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총회판결에 의하여 침해된을 교회의 이익은 설교와 예배 인도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수 있는 이익인데 그것 자체는 을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일 뿐,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을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위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6.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7. 은퇴목사의 후임목사 청빙에 관한 권한

후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은 민법 제691 조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은퇴목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8. 총회 헌법과 지교회 정관의 효력

가. 명확한 판례 부존재

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 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교회분열 시 교회 재산 소유

- 가.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나.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 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수 없게 된다.

10. 교단 탈퇴

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 및 출입 방해 금지 등 가처분])

나.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위에서 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

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의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019년 교단 재판위원회 세미나

행정문서서식

- 1. 지교회-지방회
 - 3-31 해벌 및 복권 신청(지교회/지방회용)
- 2. 지방회-총회
 - 7- 5 징계 전말 보고
 - 7-6 해벌 및 복권 신청(지방회/총회용)
 - 7- 7 사면 및 기록말소 청원
- 3. 서식
 - 8- 9 고소장
 - 8-10 상소장
 - 8-11 기소장
 - 8-12 기소연장 보고
 - 8-13 판결문
 - 8-14 사건송부서
 - 8-15 사건서류 목록

(서식 3 - 31 호)

フ	독교	대형	나 서 7	当 記	히
	┑╨	91 T	' 6'	구 ╨	-1

교회

핸드폰 /

주소 / 연락처 /

제 호_____ 20 년 월 일

수 신 지방회장

제 목 해벌 및 복권신청

징계법 제2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해벌 및 복권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직 분	
생 년 월 일		소속교회	
징 계 종 목	F	징계년월일	
징계사유			

첨 부

- 1. 당회록(미조직교회는 직원회의록) 사본 1부
- 2. 판결문 사본 1부. 끝.

담임목사(치리목사)

(직인)

※ 치리회가 감찰회인 경우는 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서식 7 - 5 호)

/ I — III VI SI X 1 II I	フ	돌i	고대	하상	月月	ग्रहे
--------------------------	---	----	----	----	----	-------

지방회

2	ミ ク		,
	一厶	_	/

연락처 /

핸드폰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총회장

제 목 징계 전말 보고

징계법 제21조에 의하여 징계 전말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성 명	직 본	
생 년 월 일	소속교회	
징 계 종 목	징 계 년 월 일	
징 계 사 유	1	

첩 부 판결문 사본 1부. 끝.

지방회장

(직인)

※ 지교회,감찰회는 본 서식에 준하여 지방회장에게 보고합니다.

※ 징계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 및 감찰회는 지방회장에게, 지방회장은 총회장에게 2주일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서식 7 - 6 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지방회

일

주소 /		연락처 /		핸드폰 /			
제	호				20	년	월
스	시	초히자					

수 신 **총회장**

제 목 해벌 및 복권신청

징계법 제2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해벌 및 복권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직 본	
생 년 월 일	소 속 교 회	
징 계 종 목	징계년월일	
징계사유	511 5	

첨 부 1. 당회록(미조직교회는 직원회의록) 사본 1부

- 2. 지방회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3. 판결문 사본 1부. 끝.

지방회장 (직인)

(서식 7 - 7 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지방회

제 호 _____ 20 년 월 일

수 신 총회장

제 목 사면 청원

헌법 제9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직 본	
생 년 월 일	소 속 교 회	
징 계 종 목	징계년월일	
징계사유		

첨 부 1. 당회록(미조직교회는 직원회의록) 사본 1부

- 2. 지방회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3. 판결문 사본 1부
- 4. 공적서(지방회장 발행) 1부
- 5. 해벌통지서 사본 1부. 끝.

지방회장 (직인)

※ 기록말소도 위와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서식 8 - 9 호)

고 소 장

1. 고소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속지방회, 교회, 직위:

2. 피고소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속지방회, 교회, 직위:

3. 고소내용

범죄사실 :

범죄일시 : 범죄장소 :

범죄내용 :

4.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속지방회, 교회, 직위:

본 고소자는 징계법 제12조 의거 위의 사실을 고소하오니 조사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 년 월 일

고소자 (사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장 귀하

※ 치리회 : 당회, 지방회, 총회 재판위원회

※ 기소장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고소장 부본을 원, 피고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식 8 - 10 호)

상 소 장

사건명:

사건번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속지방회, 교회, 직위:

본인은 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이 사건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합니다.

판 결 표 시

주 문	년 월 일 선고 년 월 일 판결문 정본 수령
상고취지	예 : 원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구함. 원판결을 파기(전부 또는 일부)하고 정당한 판결을 구함.
상고이유	

첨 부 판결문 사본 1부. 끝.

20 년 월 일

상소자 (사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장 귀하

기 소 장

- 1. 사 건 명 :
- 2. 사건번호 :
- 3. 피고소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소속지방회, 교회	, 직위			

- 4. 죄과사실
- 5. 기소의견
- 6. 적용법조문

끝.

20 년 월 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장

기소위원

(사인)

기소위원

(사인)

- ※ 논고문, 판결 요구 의견은 별도입니다.
- ※ 본 기소장은 재판위원, 고소자, 피고소자 앞에서 낭독해야합니다.

(서식 8 - 12 호)

기 소 연 장 보 고

- 1. 사 건 명 :
- 2. 사건번호 :
- 3. 피고소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소속지방회, 교회	, 직위			

사건 조사상 으로 인하여 일간 연장이 불가피 하옵기에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보고합니다. 끝.

20 년 월 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회

기소위원

(사인)

기소위원

(사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장 귀하

판 결 문

- 1. 사 건 명:
- 2. 사 건 번 호 :
- 3. 고 소 자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소속지방회	, 교회, 직위			

4. 피고소자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소속지방회, 교회, 직의	1		W.	

- 5. 기 소 일 자 :
- 6. 재판종결일자 :
- 7. 주 문:
- 6. 판 결 이 유 :
- 7. 적용법조문 : 끝.

20 년 월 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회 (직인)

재판위원장 (사인)

재판위원 (사인)

재 판 위

(서식 8 - 14 호)

사 건 송 부 서

- 1. 사 건 명:
- 2. 사 건 번 호 :
- 3. 피고소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소속지방회,	교회, 직위			

위 사건을 별지와 같이 송부합니다.

첨 부 관련 서류 1부. 끝.

20 년 월 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회

기소위원

(사인)

기소위원

(사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판위원장 귀하

사 건 서 류 목 록

건 명	매 수	면 수	중 빙 번 호	비고
			- 4	
			7	
457				
4				
	26			
		N N		

[※] 사건서류철은 접수일자 순으로 철합니다.

